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5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윤준병・이기헌・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관련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 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조).
-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 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10조제1항).
-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라.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29조의6 제1항).
- 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 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 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97조의9제1항).
-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24제1항).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1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를 "2020년 1월 1일부터 인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세액감면) ①
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u>2024년</u> 12월 31	<u>2029년</u>
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	
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	
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	
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 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 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 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 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

1. • 2. (현행과 같음)
②
<u>202</u>
<u>9년</u>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③ (생략)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 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 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2</u>
<u>029년</u>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 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 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 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 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 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

<u>.</u>
⑤
<u>2029년</u>
<u>2029년</u>
<u>2029년</u>

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 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 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 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 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 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6
<u>2029년</u>
,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	19년
	<u> </u>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끝름)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	
에 19도(343개 · 8도기급)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	
(1)	세 당/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 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 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하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 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 략)

2029년
②
<u>2029년</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2029년 -----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③ (생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0년 1월 1일부
<u>터 인하하여</u>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u>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u>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
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
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

③ ~ ④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

② <u>계약기간</u>
<u>.</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2020
<u>2029</u>
<u>년</u>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 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 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 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 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 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 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 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 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 <u>2029년</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u>2029년</u>

를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 ④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u>2029년</u>
<u>.</u>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